

- ④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고 재이수 할 수 있으나, 취득한 성적이 D+ 이하 과목만 재이수 할 수 있다.
- ⑤ 대학예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사경고) ① 일반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학생에게는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가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학사경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수료 및 졸업

제41조(졸업) ① 졸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4.5.27.>

1. 본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1.5 이상인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인정 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출석, 원격 포함)로서 「학점인정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이고 이중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23.4.18.>
 - 나. 「학점인정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대학에서 해당전공학점으로 48학점(출석, 원격 포함)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23.4.18.>
 -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본 대학에 제출한 자
 - 라.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 학칙 사본 및 학위증 사본을 학위수여 예정일 21일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학위수여요건 해당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② 졸업여부 및 졸업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5.27.>



제42조(학위수여) 졸업자에게는 별표2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할 경우 본교 학위종류 및 전공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며, 유사성 판단은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 및 수료 기준학점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학년수료증서)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5조(졸업평가 및 졸업인증)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서 졸업평가를 졸업시험,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졸업평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에서는 졸업인증제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공개강좌

제46조(공개강좌) ① 교양, 학술 또는 실무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특례입학

제47조(외국인학생 등)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외교포 및 외교관자녀, 본 대학의 총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등에게는 정원외로 입(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외국인 등 특례 입(편입)학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13장 등록금

제49조(등록금) 학생은 매학기초 등록 시에 수업료, 기타의 납입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입학금) 입학(편·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제49조에 규정된 등록금과 함께 입학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등록금 등의 감면)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하며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금,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등록금, 입학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2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학생활동

제53조(학생회) ① 본 대학의 설립정신에 따라 기독교정신의 토대위에서 학풍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치활동을 통해 지도자적 인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연마하기 위해 백석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54조(회원 자격) 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휴학 및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5조(지도교수의 학생지도) ①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자치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 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금지활동) ① 학생은 학교내외를 막론하고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성차별 및 성희롱·폭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기회의 공정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학생 간 또는 학생, 교·직원 간 대인관계 시,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이성을 열등한 성으로 보는 언행이나 성적대상으로 표현하는 행위

제58조(학생단체의 승인) 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활동의 사전승인)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 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교내 초청

② 전항 제1호의 집회에 관하여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간행물의 지도와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장 열린교육

제61조(열린교육) 본 대학은 학생 또는 일반사회인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열린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위탁생) ① 정부 각 부처 또는 자치 단체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유 기관의 직을 떠났을 때에는 제적한다.

③ 위탁생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62조의2(시간제등록생) ① 본 대학은 일반 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II. 학 사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부(과)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 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은 재학생과 통합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을 각각 구분하여 해당 연도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각각 선발한다.

④ 시간제등록생 선발은 사범학부 및 보건학부를 제외한 학부를 모집단위로 선발하며,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등록제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시간제등록생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⑧ 기타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수업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하며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을 포함함)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은 당해 계약기관 또는 본 대학 및 본 대학의 법인시설(천안, 서울)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학생 수 및 학생 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장학금

제64조(장학금의 지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제66조(장학세칙)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규율, 포상 및 징계

제67조(규율) 본 대학의 학생은 기독교인으로서 단정한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임하여야 하고, 학교가 정하는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래 국가 및 인류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8조(포상)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특히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69조(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업이 열등하며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불량한 자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5. 기타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교무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장 조직 등

제70조(조직 및 직제) 본 대학의 조직 및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70조의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3(학교기업 설치·운영) ①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의4 삭제 <2022.2.21>

제70조의 5(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이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와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의6(협력연구소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7(자체평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8(사회봉사 및 장애학생지원) 본 대학은 사회봉사 및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9(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 본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에 활용 가능하며,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5.27.>

제19장 교수회

제71조(구성) ① 본 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과 총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교·직원도 참석시킬 수 있다.

제72조(소집)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3조(성립) 교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74조(심의)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20장 교무위원회

제75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의 교무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차·실장급 이상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필요할 경우 약간 명의 교·직원을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76조(기능)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장 대학평의위원회

제77조(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대학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4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대표 5인
2. 직원 대표 5인
3. 조교 대표 1인
4. 학생 대표 2인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제78조(대학평의위원회 기능) 대학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9조(대학평의위원회 운영)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80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심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1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 부속기관으로 백석정신아카데미, 백석역사박물관, 도서관, 백석문화예술관, 정책본부, 대외협력본부, 인성개발본부, 교목본부, 인사관리실, 정책협력실, 법무지원실, 취업진로지원처, 글로벌인재육성처, 창업지원단, 대외협력처, 국제교류처, 지역혁신추진단, 교목실, 영성훈련원, 백석역사관, 기독교박물관, 현대시100년관, 보리생명미술관, 기독교미술연구소, 백석생활관, 인성개발원, 백석휴먼인성혁신사업단, 전산정보원, 평생교육원, 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원(서울), 기독교대학실천원(천안), 백석연수원, 교수학습개발원, 원격교육지원센터, 커리큘럼인증센터, 학생역량관리센터, 인권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국제교육센터, 군선교지원센터, 백석태권도선교단, 글쓰기클리닉센터, 대학성과관리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RISE센터, 글로컬사회공헌센터, 지역혁신센터, 백석XR센터, 산학공유협업센터, 기업협업센터, 백석무인항공센터, 백석실버센터, 백석웰다잉힐링센터, 아동가족상담클리닉,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백석아동발달지원센터, 보건실, 백석연구소, 신학은학문이아니다연구소, 유관순연구소, 기독교학문연구소, 링크플러스사업단, 기독교학부실습관, 사범학부실습관,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본부, 백석대학합창단을 두고, 부설기관으로 백석대학교회(천안·서울·청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27.>

② 제1항의 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장 교원

제82조(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따로 정한다.

제83조(특별교원) 본 대학에는 특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장 학칙개정

제84조(학칙 개정절차) 이 학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1. 학칙 개정안 작성 및 공고: 기획처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개정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등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심의 및 공포·시행: 학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시행한다.

제8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 1항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3조 제1항은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학번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복학자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학했던 자의 복학에 있어 당초 소속되어 있는